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5. 12.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5. 12.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3조)
- 다.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4조)
- 라. 노후·유희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1) 기획감사담당관(법무통계담당): 규제심사
 - 2)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622호

가) 예고기간: 2023. 4. 10. ~ 4. 30.(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조례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인구증가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4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범위·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희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군·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군·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시·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시·군·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군·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군·구기본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와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